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. 9. 8 선고 2023가단2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중중회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손양곤

변 론 종 결 2023. 8. 11.

판 결 선 고 2023. 9. 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○ 주위적 청구취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D 답 1,954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 중 1/2 지분에 관하여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. 8. 28. 접수 제47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○ 예비적 청구취지

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토 구입대금으로 4,000만 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인 위토답으로서, 원고가 원고 대표자 E의 아버지 망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두었는데,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G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2004. 11. 23.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, 망 G가 2008. 6. 7.에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들이 위 토지를 1/2 지분씩 상속하였다.

따라서 주위적으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,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토 구입대금으로 4,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.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여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(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),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.

[원고의 주장을 원고와 망 F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F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권리인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, 망 G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.]

3.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권원에 관한 주장과 증거가 없으므로, 이유 없다.

[원고는, 2019년경 피고들을 대리한 H로부터 2,500만 원의 대토 구입대금 지급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, 주장 자체로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]

4. 결론

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이효제